
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(윤건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23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6. 12.

발 의 자 : 윤건영 · 양부남 · 신정훈
윤준병 · 한준호 · 차지호
이광희 · 김문수 · 정태호
김성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·경영하거나,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됨.

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2항 중 “광역시”를 각각 “통합특별시, 광역시”로 한다.

제47조제1항 중 “광역시장”을 “통합특별시장·광역시장”으로, “, 시”를 “, 통합특별시·시”로 한다.

제49조제1항 후단 중 “, 광역시장”을 “, 통합특별시장, 광역시장”으로, “·광역시장”을 “·통합특별시장·광역시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9조(지방채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특별시, <u>광역시</u>, 특별자치시, 도 및 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 또는 특별시, <u>광역시</u>,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(이하 “특례시”라 한다)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거나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.</p> <p>③ · ④ (생략)</p> <p>제47조(사업 조정) ①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조정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장·<u>광역시장</u> 및 도지사가 조정하고, <u>시·도의 경</u></p>	<p>제19조(지방채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u>통합특별시, 광역시</u>-----</p> <p>-----<u>통합특별시, 광역시</u>-----</p> <p>③ ·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7조(사업 조정) ① -----</p> <p>-----<u>통합특별시장·광역시장</u>-----, <u>통합특</u></p>

